

미국의 재산세제 개요와 영국과 일본의 최근 흐름(II)

박 균 조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행정사무관

II. 미국의 재산세제도

7. 형평화(Equalization) 작업

형평화는 각 주가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주내의 자치단체가 각각 행하고 있는 재산평가의 적정화·균형화를 꾀하고 평가수준을 동일로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이다.

이 형평화 절차도 재산세 평가와 구조를 복잡하게 하며 납세자로부터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하고 있는 요인의 하나이다.

카운티, 시 등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과세관할 구역내의 모든 재산에 대해 일정한 평가비율을 적용하는(일부 특정의 재산구분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비율의 적용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도 있음)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평가비율은 과세단체에 따라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과세관할 구역내에서는 카운티나 학교구와 같이 복수의 구역(시)에 걸쳐있는 경우도 드

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공통의 기준을 이용하여 조정하는 것에 의해 평가수준의 동일화를 꾀하고 더욱이 주내 자치단체의 평가 적정화·균형화를 꾀하는 것이 형평화이다. 형평화는 또한 주 보조금 산정시에도 똑 같은 이유에서 필요로 된다. 이것은 일본에서 기준채정수입액 산정시 표준세율 이하 적용 단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재산평가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 평가원의 직무를 조사하고 비교 대조하는 것에 의해 그 적정화를 꾀하는 것은 주 재조사위원회(state review board) 또는 지방재조사위원회(local review board)에 주어진 임무로 되어 있다.

과세관할 구역간 또는 재산 분류간에 부정합·부적정이 있는 경우는 당해 위원회가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된다. 예를 들면, 사우스다코타주의 세입성(Department of Re-

venue)은 주내 각각의 카운티에 있어 평가액의 중앙치(median)가 시장가격의 적어도 85% 정도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치단체간의 평가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 철도 및 제조업과 같이 평가가 복잡·곤란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통일성·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 주에서 스스로 평가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이의신청(Appeals)

재산의 과세평가액(assessed value)에 대한 이의신청의 정식적 처리절차는 각각의 주에 독자로 정해져 있다. 다만, 각 주는 세율(mill levies)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의신청 절차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그 기본적 흐름은 다음과 같이 공통한다.

납세자가 그 평가액에 불복이 있는 때는 우선 평가를 행한 평가원 사무소에 연락하고, 증거(비교 가능한 재산의 매매사례, 평가상 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설명, 평가상 재산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요인 등)를 제출하여 평가가 맞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고 평가액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평가원 사무소와의 사이에서 역시 합의될 수 없는 경우, 재산평가에 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 있는 중립의 제3자 기관(예를 들면 카운티 위원회(county board)나 평가액 재조사위원회(board of assessment review)와 같은 공선에 의한 기관)에 정식의 이의신청을 행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3자 기관은 납

세자의 이의신청 심문·의결을 행하지만 그 재결에 대해 역시 납득할 수 없는 경우는 더욱이 재판소에 신청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역시, 대부분의 주에 있어 재산평가에 관한 이의신청에는 특정의 마감일이 두어져 있으며 이들 마감일을 지나쳐 버리면 납세자의 이의신청은 처리·심문되지 않는다.

9. 재산세의 제한(Property Tax Limits)

재산세 정책은 또한,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쏘美를 통해 주 헌법 및 주 법에 정하는 바에 기초하여 재산평가액 증가의 제한, 재산세율의 인상제한, 전체로서 지방세입 증가에 대한 제한 등, 재산세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주민에 의한 입법이나 주 헌법 개정을 가능하게 하는 주민발의(이니시어티브: initiative petition process)를 인정하고 있는 주에서는 이제까지 많은 제한이 제안·실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프로포지션 13(Proposition 13)』, 매사츄세츠주의 『프로포지션 2½(Proposition 2½)』 및 오레곤주의 『삭감과 상한(Cut and Cap)』은 유권자에 의해 직접 발안된 재산세 제한 수법으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사례이고 그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역시, 주민에 대한 이니시어티브 절차가 없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재산세에 관해 무언가의 제한을 두고 있다.

(1) 캘리포니아주 『프로포지션 13(Proposition 13)』

캘리포니아주의 『프로포지션 13』은 주의 세제에 관하여 행해진 주민발의(이니시어티브)에 의한 주 헌법 개정요구를 말한다. 1978년 6월에 채택되었다.

주민발안이라는 것은 현재의 간접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것이고 직접 민주주의적인 것을 갖고 있다.

주 헌법이나 주법의 개폐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관련 조문을 작성하고 그 가부를 주민 투표로 묻는다고 하는 것이다.

프로포지션 13은 재산세 등의 강화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재산세 최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의 1%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또한 재산세는 카운티가 징수하고 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카운티내의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것으로 함

② 재산의 시가는 1975년 3월 1일 현재 카운티의 평가원이 행한 것으로 한다. 이후에 취득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 시가로 하며, 또한 각 연도에 있어 평가액의 상승률은 2%를 넘지 않을 것

③ 주에 있어 신세의 창설 또는 세율개정 등에 의한 증세는 주의 상하양원의 각각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할 것. 다만, 부동산에 관해서는 여하한 신세도 인정되지 않을 것

④ 시군구, 카운티, 특별구 등 지방정부는 그 주민(유권자)의 2/3의 승인이 없으면 특별한 세를 과할 수가 없는 것.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하한 신세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매사추세츠주 『프로포지션 2½(Proposition 2½)』

매사추세츠주의 『프로포지션 2½』은 주민 발안(이니시어티브)에 의해 행해진 주의 세제에 관한 일반법의 개정요구를 말한다. 1980년 11월에 채택되었다.

이것은 매사추세츠주내의 자치단체에 의해 매년 과세할 수 있는 재산세 총액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프로포지션 2½은 매년도의 재산세 과세에 있어 2타입의 제한을 두는 것이다. 하나는 『과세실링(levy ceiling)』이라고 말해지는 것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산총액은 그 단체내의 모든 과세대상 재산(부동산 및 동산)의 시가총액(total full and fair cash value)의 2.5%를 넘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하나는 『과세상한(levy limit)』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각 자치단체의 각 연도마다의 재산세액 증가액을 총액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과세상한은 원칙으로 과세실링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포지션 2½하에서는 자치단체의 매년도 과세상한을 자동적으로 산정되는 전 회계연도의 2.5% 증가 및 재산의 재평가에 의한 것이 아닌 평가액의 증가라 하는 2개의 요인에 의해 구해진다. 후자의 평가액 증가는 소위 새로운 개발에 따른 성장에 의한 것. 예를 들면, 새로운 주택의 분양에 의한 학교 입학자수의 증가나 공안 등과 같은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코스트 증가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달하기 위해 세액의 증가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프로포지션 2½은 자치단체에 인정되고 있

<표 5> 지방세에 차지하는 지방재산세의 비율, 1999년도 회계

순 위	주 / 관할단체	%	순 위	주 / 관할단체	%
1	뉴햄프셔	98.8	27	플로리다	78.7
2	로드아일랜드	98.6	28	와이오밍	77.6
3	커네티컷	98.3	29	캔자스	76.5
4	뉴저지	97.9	30	노스캐롤라니아	74.6
6	매사추세츠	96.9	31	버지니아	71.7
7	버몬트	95.8	32	아리조나	70.6
8	몬태나	95.3	33	펜실바니아	69.7
9	미네소타	94.5	34	캘리포니아	66.2
10	위스콘신	94.0	35	오하이오	66.0
11	아이다호	93.9	36	유타	65.7
12	미시시피	91.8	37	아칸소	64.6
13	아이오크	90.3	38	네바다	63.3
14	미시건	89.8	39	워싱턴	62.4
15	인디애나	88.6	40	콜로라도	61.5
16	노스타코타	88.1	41	미주리	60.2
17	사우스 캐롤라이나	84.9	42	조지아	59.5
18	일리노이	82.9	43	테네시	59.0
19	웨스트 버지니아	82.8	44	뉴욕	57.0
20	오레곤	80.1	45	메릴랜드	55.2
21	텍사스	79.8	46	뉴멕시코	54.2
22	네브라스카	79.6	47	켄터키	53.9
23	하와이	79.6	48	오클라호마	52.7
24	알라스카	79.3	49	루이지애나	39.4
25	델라웨어	79.0	50	알라바마	37.5
26	사우스 타코타	78.9		합중국 평균	72.3

는 과세 자유도를 과세상한의 범위 내에서 높이는 것이지만, 더욱이 주법에는 주민투표에 의해 과세상한을 특별히 증가시키는 수법(overrides) 및 공채상환이나 시설건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과세상한을 특별히 증가시키는 수법(exclusions)이 규정되어 있

다.

Overrides, Exclusions 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매사추세츠주 세입성(Massachusetts Department of Revenue)에서 발행되고 있는 입문서("Levy Limits : A Primer on Proposition 2½"), 소책자("Proposition 2½

Referenda Question”) 등을 참고했으면 한다.

(3) 오레곤주 『삭감과 상한(Cut and Cap)』

오레곤주의 『삭감과 상한』은 주민발의(이니시어티브)에 의해 행해진 주 헌법 개정 요구(Measure 50)를 말한다. 1997년 5월에 주민투표에 의해 채택(법 시행은 1997년 7월 14일) 되었다. 이것은 오레곤주내의 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재산세를 삭감하는 것 및 그 증세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메이저 50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각 과세대상 재산의 1997~1998년의 과세평가액 수정은 1995~1996년의 과세평가액의 90%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② 개개 재산의 과세평가액의 증가를 건물의 신축·개축, 부지의 분필, 용도지역의 변경 등과 같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연 3%로 제한하는 것

메이저 50에 의해 오레곤주의 과세 자치단체의 항구적 세율이 결정되는 것으로 되지만 등록된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는 주민투표에서 ⅔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는 이 항구적 세율과는 별도로 새로운 단기간의 과세를 행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역시, 오레곤주에서는 메이저 50에 앞서 똑 같은 취지에 의한 메이저 47이 1996.11에 주민투표에 의해 채택되었지만 이것은 시행되기 도 전에 메이저 50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 때문에 메이저 50에 기초한 구조는 옛날의 재산세제 요소와 메이저 47의 요소에 의해 복잡화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이들의 상세에 대해서는 오레곤주 세입성(Oregon

Department of Revenue)의 웹사이트(www.dor.state.Or.US/) 정보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10. 재산세에 대한 의존도

(Reliance on the Property Tax)

자치단체 세입에 차지하는 재산세 비율, 즉 재산세에 대한 의존도는 1970년대에 그 피크를 맞았다. 그 후 높은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반대운동도 있어 많은 주에서 재산세에 대하여 과세제한이 행해지는 것으로 되었다. 그 결과 주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산세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저하했다. 그렇지만 역시 재산세는 주요한 세입원으로 계속되고 있다.

자치단체에 있어 재산세는 현재도 역시 제 1의 세원이고, 전 지방세수의 거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표 5>는 지방세수 총액에 차지하는 지방재산세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역시, 이 표에 표시되고 있는 비율은 재산세와 자치단체에서 징수되는 세안을 비교한 것이고, 지방세입에 있어 기타의 재원(주나 연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은 포함되고 있지 않다.

지방세에 차지하는 재산세의 비율이 90%를 넘고 있는 주는 뉴햄프셔 등 13주이고, 80%이상 90% 미만으로 되어 있는 주가 7주이다. 전미 평균 72.3%를 상회하고 있는 주는 30주이다. 60%를 하회하고 있는 곳은 알라바마주, 조지아주, 켄터키주, 루이지아나주, 메릴랜드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오클라호마주, 테네시주의 9주이다.

<표 6> 주별 지방세에 대한 재산세의 비율, 1999년도 회계

지방/주	90%초과	80%초90%이하	70%초80%이하	60%초70%이하	60%미만
뉴잉글랜드 지방					
커네티컷	○				
메인	○				
메사추세츠	○				
뉴햄프셔	○				
로드아일랜드	○				
버몬트	○				
미들아틀란틱 지방					
델라웨어			○		
메릴랜드					○
뉴저지	○				
뉴욕					○
펜실바니아				○	
그레이트레이크지방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건		○			
오하이오				○	
위스콘신	○				
프렌즈 지방					
아이호와	○				
캔자스			○		
미네소타	○				
미주리				○	
네브라스카			○		
노스다코타		○			
사우스다코타			○		
사우스이스트 지방					
알라바마					○
아칸소				○	
플로리다			○		
조지아					○
켄터키					○

외국의 지방세제도

지방/주	90%초과	80%초90%이하	70%초80%이하	60%초70%이하	60%미만
루이지애나					○
미시시피	○				
노스카롤라이나			○		
사우스카롤라이나		○			
테네시					○
버지니아			○		
웨스트버지니아		○			
사우스웨스트 지방					
아리조나			○		
뉴멕시코					○
오클라호마					○
텍사스			○		
록키마운틴 지방					
콜로라도				○	
아이다호	○				
몬테나	○				
유타				○	
와이오밍			○		
파웨스트 지방					
알래스카			○		
캘리포니아				○	
하와이			○		
네바다				○	
오레곤		○			
워싱턴				○	
합 계	13	7	12	9	9

각 자치단체의 세입에 있어 재산세 의존도는 그 주에 있어 재정상의 중앙집권 정도, 주 정부·자치단체간 책임구분의 실재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지만, 재산세 자체의 수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세출(행정서비스의 수준) 및 자치단체가 재산세 이외의 세입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까 등의 요인도 크게 영향 받고 있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재산세에 무언가의 제한을 두고 있는 주의 대부분은 주내의 자치단체가 주의 보조금 이외에 단체의 자주재원으로 되는 다른 수입을

<표 7> 주세입·자치단체 세입의 합계에
차지하는 재산세 비율

순위	주	재산세에서 얻는 세입총액의 비율 (%)
1	뉴햄프셔	31.21
2	뉴저지	24.25
3	커네티컷	21.75
4	버몬트	20.37
5	일리노이	19.16
6	메인	19.11
7	로스아일랜드	17.84
8	매사추세츠	17.62
9	몬타나	17.36
10	인디애나	16.76
11	텍사스	16.01
12	플로리다	15.72
13	캔자스	14.96
14	아이호와	14.67
15	사우스다코타	14.61
16	버지니아	14.42
17	뉴욕	14.37
18	네바다라스카	14.31
19	위스콘신	14.24
20	아리조나	13.94
21	콜로라도	13.43
22	미시건	13.33
23	메릴랜드	13.25
24	와싱턴	13.15
25	펜실바니아	12.95
26	오하이오	12.43
27	미네소타	12.17
28	노스다코타	12.15
29	아이다호	11.88
30	와이오밍	11.82

순위	주	재산세에서 얻는 세입총액의 비율 (%)
32	사우스캐롤라이나	11.44
33	오레곤	11.10
34	미주리	11.03
35	네바다	10.76
36	캘리포니아	10.49
37	아칸소	10.44
38	미시시피	9.28
39	유타	8.97
40	노스캐롤라이나	8.87
41	테네시	8.56
42	웨스트버지니아	7.99
43	알래스카	7.89
44	하와이	7.35
45	켄터키	7.32
46	오클라호마	7.10
47	델라웨어	6.31
48	루이지애나	6.30
49	뉴멕시코	5.23
50	알라바마	5.05
	합중국 평균	13.38

연을 수가 있는 것처럼 지방선택 매상세 (local option sales tax) 및 지방선택소득세 (local option income tax) 등 로컬옵션 택스의 과세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뉴잉글랜드 지방의 많은 주는 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의존도는 높게 되어 있다. <표 6>은 지방세원으로 어느 정도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을 까의 지방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7>은 주세입 및 자치단체 세입의

합계에 차지하는 재산세 비율을 퍼센트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를 포함 주 전체로서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재산세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을 까에 대하여 일정한 시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표는 각종요

금 등의 수익자 부담(user fees)이나 연방자금(federal funds)과 같은 세외수입을 포함 모든 세입을 고려한 것이다. 알라바마주는 5% 정도에 불과하다. 상급정부(연방·주)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표 8> 주 전역에 과세되는 재산세

주	부동산에 대한 주 재산세의 세율
알라바마	주세의 세율은 주내의 과세대상재산의 과세평가액에 대하여 매년 0.65%임
인디애나	토탈 주세율은 평가액 100달러에 대하여 1센트(2001년 3월 1일 이후는 0.33센트로 제한되고 있음)
캔자스	항구적인 주세의 부과에는 주립교육기관을 위한 1밀(1/1000) 부과, 정신병, 지적장애자 및 시각장애자를 돌보고 있는 주립시설을 위해 0.5밀 부과, 주립갱정시설을 위해 0.25밀 부과가 포함됨
켄터키	부동산에 대한 주세율은 평가액 100달러당 14.1센트임
메릴랜드	부동산 주세의 부과는 과세평가액 100달러당 21센트임
미시건	주교육세는 모든 과세대상재산에 대하여 6밀의 세율로 과세됨
미네소타	주내의 모든 사업용부동산 및 숙박시설에 재산세가 과세됨. 부과액 총액은 인플레이의 액에 의해 매년 증대하는 것처럼 설정됨. 그 때문에 세율은 매년 변경된다.
몬타나	주는 학교재정 형평화를 위해 95밀의 주 전체의 세와 커뮤니티 칼리지(지방정부의 원조를 받아 지역주민의 요구에 응한 코스를 제공하는 2년제의 칼리지)을 위해 추가적인 6밀의 액을 부과하고 있음
네바다	과세평가액 100달러당 15센트의 주재산세는 오로지 행정부채의 반체에 사용됨
뉴햄프셔	교육을 위한 재산세가 주전역에 걸쳐 평가액 1,000달러당 6.6달러의 세율로 부과됨. 이 세는 2003년 1월에 실효하는 것으로 되었다.
유타	주의 세율은 주내의 과세대상 재산의 과세평가액 1달러당 0.00048을 넘을 수가 없다.
버몬트	주 전체의 교육재산세는 형평화된 교육재산의 평가액 100달러당 1.1달러의 세율로 모든 비주택용 재산과 주택에 과세된다.
와싱턴	주는 시장가격 100달러당 0.36달러의 세율로 학교재산세를 과세한다.
위스콘신	매년 모든 과세대상재산에 과세되는 0.2밀의 주세는 주의 삼림계획 재원으로 사용됨
와이오밍	12밀의 주세는 학교지원을 위해 과세된다.

11. 주 재산세(State Property Taxes)

주 세입을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는 주는 적다. 재산세가 주 세입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현재 몬테나주, 바몬드주, 워싱턴주, 와이오밍주의 4주 뿐이다.

일반적으로 주에서는 자동차 공익사업회사(전력, 가스회사)의 재산, 철도재산, 항공기 및 기재, 석유·가스재산 등과 같은 특정의 재산 타입에만 과세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하여 주 전체의 세를 과세하고 있는 곳은 15주 뿐이다(〈표 8〉 참조).

주 전체에 걸친 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15개주 중 미네소타주와 뉴햄프셔주의 역사가 가장 짧다. 미네소타주는 2001년의 通常주의회에서 세의 경감조치 확대를 포함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매년의 세입증가분은 교육을 위해 배분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사업용 재산(및 호텔객실)에 대하여 州州的인 재산세를 새롭게 과세하는 것을 정했다.

뉴햄프셔주 의회에서는 학교재원 공평소송(shool finance equity suit)을 받아, 학교 교육에의 자금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세입이 필요하게 되어, 1999년에 평가액 1천 달러에 대하여 6.6달러의 세율로 전적인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을 승인했다(그 후 2001년의 통상의회에서 평가액 1,000달러 당 5.8달러의 세율로 감액되고 있다).

12. 재산세 부담의 정도

〈표 9〉는 주 재산세 및 지방재산세의 합계에 대한 1인당 세액 및 개인소득에 차지하는

재산세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개인소득에 차지하는 재산세 비율은 그 주의 전반적인 부유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 주의 주민 담세력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 부담 상황을 비교하기 위한 가장 우수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이들의 순위에 보이고 있는 수치는 양 지표 모두 각 주간 극히 큰 차이를 보인다. 뉴햄프셔주는 개인소득에 차지하는 재산세의 퍼센트에서는 톱의 지위이지만, 1인당 재산세에서는 2위로 되어 있다. 뉴저지주는 1인당 재산세에서는 1위이지만 개인소득에 차지하는 재산세의 퍼센트는 4위로 되어 있다. 또한, 알라바마주의 재산세 부담은 전미 평균의 1/2정도 밖에 안된다.

표는 각주의 재산세 부담의 실태를 수치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 순위 등도 흥미 깊은 것이지만 그들로부터 많은 결론을 도출하고 과잉된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된다. 재산세에의 의존도가 높은 주는 이 표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있지만 다른 세목에의 의존도는 낮게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등 이와 같은 수치적인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뉴햄프셔주의 재산세 부담은 높지만, 동주의 주민에게는 일반 대상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자·수취배당금(dividend income) 이외의 소득세는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등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뉴햄프셔주는 세 부담이 가벼운 주로 쏠징세액이 개인소득에서 차지하는 퍼센트로 보면 49위에 있지만 재산세에 관한 이 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표 10〉은 모든 주세

<표 9> 주 재산세·지방재산세의 1인당 세액 및 개인소득에 따른 비율

주	징세액 (1,000달러)	1인당		100달러당	
		총액(달러)	순위	총액(%)	순위
뉴햄프셔	2,014,400	1,667.30	2	5.7	1
메인	1,546,856	1,234.50	7	5.3	2
버몬트	765,688	1,289.00	6	5.2	3
뉴저지	14,336,025	1,760.50	1	5.2	4
몬타나	891,131	1,009.20	13	4.8	5
로스아일랜드	1,285,113	1,296.80	5	4.6	6
와이오밍	522,697	1,089.00	11	4.4	7
알래스카	727,813	1,173.90	9	4.2	8
뉴욕	24,758,694	1,360.60	4	4.2	9
커네티컷	5,174,841	1,576.70	3	4.2	10
위스콘신	5,524,611	1,052.30	12	4.0	11
일리노이	14,099,968	1,162.60	10	3.9	12
텍사스	18,804,963	938.2	16	3.7	13
네브라스카	1,567,009	940.6	15	3.6	14
아이오와	2,532,735	882.8	20	3.6	15
매사추세츠	7,300,559	1,182.30	8	3.6	16
사우스타코타	617,287	842.1	22	3.5	17
와싱턴	5,763,411	1,001.30	14	3.5	18
인디애나	5,177,129	871.1	21	3.5	19
플로리다	13,900,952	919.9	18	3.5	20
노스다코타	497,220	784.3	29	3.4	21
미시건	8,810,590	893.2	19	3.3	22
미네소타	4,458,850	933.6	17	3.2	23
아리조나	3,584,155	750.1	32	3.2	24
오하이오	9,334,354	829.2	25	3.2	25
캔자스	2,115,021	796.9	28	3.1	26
아이다호	815,660	651.5	35	3.0	27
오레곤	2,558,189	771.5	30	3.0	28
버지니아	5,757,546	837.7	24	3.0	29
펜실바니아	9,659,064	805.3	26	2.9	30
콜로라도	3,413,607	841.6	23	2.9	31

미국의 재산세제 개요와 영국과 일본의 최근 흐름(II)

주	징세액 (1,000달러)	1인당		100달러당	
		총액(달러)	순위	총액(%)	순위
사우스캐롤라이나	2,475,954	637.1	36	2.9	32
캘리포니아	25,424,960	767.1	31	2.8	33
조지아	5,422,816	696.3	34	2.7	34
매릴랜드	4,144,064	801.2	27	2.6	35
아칸소	1,401,967	549.6	40	2.6	36
유타	1,191,691	559.5	39	2.5	37
미시시피	1,389,918	502.0	41	2.5	38
네바다	1,261,135	697.1	33	2.4	39
미주리	3,305,361	604.5	37	2.4	40
노스캐롤라이나	4,350,642	568.6	38	2.3	41
웨스트버지니아	811,771	449.2	45	2.2	42
테네시	2,684,026	489.4	43	2.0	43
컨터키	1,666,329	420.7	46	1.9	44
하와이	594,558	501.7	42	1.9	45
오클라호마	1,237,654	368.6	48	1.7	46
루이지애나	1,620,130	370.6	47	1.7	47
뉴멕시코	587,849	337.8	49	1.6	48
델라웨어	348,517	462.2	44	1.6	49
알라바마	1,191,792	272.7	50	1.2	50
합 중 국	239,427,272	879.7			3.3

및 지방세를 고려한 경우의 각주의 세 부담의 순위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코네티컷주가 개인소득에 대한 징세액의 비율이 가장 높다.

더욱이 소득세 우대조치(income tax break)나 직접 지불(일부 할부(rebate)) 및 환부(refund)와 같은 메카니즘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 경감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주도 있지만, 이들의 방법에 대해서도 표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재산세 경감조치는 실제로는 주의 재산세 정책

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재산세수를 재원으로 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들의 표에서는 알 수가 없다. 고액의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미 평균을 상회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세 베이스가 낮은 자치단체는 거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이들의 표에 표시되고 있는 정보에서 재산세가 『너무 높다』 라든지 『너

<표 10> 주세 및 지방세의 합계, 1999년도 회계

주/관할단체	징세액 (천달러)	1인당		100달러당	
		총액(달러)	순위	총액(%)	순위
알라바마	8,770,411	2,007.0	50	9.11	48
알래스카	1,761,609	2,841.3	22	10.26	39
아리조나	12,237,979	2,561.3	37	10.87	25
아칸소	6,076,982	2,382.2	42	11.26	18
캘리포니아	104,977,251	3,167.2	12	11.36	15
콜로라도	12,116,877	2,987.4	17	10.22	40
코네티컷	14,888,650	4,536.5	1	12.15	8
델라웨어	2,471,752	3,278.2	8	11.23	19
플로리다	40,244,933	2,663.3	28	10.02	44
조지아	21,503,096	2,761.1	25	10.77	29
하와이	3,913,612	3,302.6	7	12.30	5
아이다호	3,039,342	2,427.6	40	11.26	17
일리노이	37,969,839	3,130.8	14	10.50	34
인디애나	15,575,751	2,620.9	31	10.47	37
아이오와	7,673,090	2,674.5	27	10.80	28
캔자스	7,292,434	2,747.7	26	10.76	31
켄터키	9,760,823	2,464.2	39	11.10	21
루이지애나	10,533,303	2,409.3	41	10.80	27
메인	4,082,369	3,258.1	9	13.91	2
메릴랜드	16,558,537	3,201.6	11	10.46	38
매사추세츠	22,269,422	3,606.4	4	10.85	26
미시간	29,904,866	3,031.7	15	11.36	14
미네소타	17,187,874	3,598.8	5	12.33	4
미시시피	6,086,891	2,198.2	48	11.05	22
미주리	14,027,725	2,565.4	36	10.16	43
몬태나	2,041,456	2,312.0	46	10.88	24
네브라스카	4,623,913	2,775.5	24	10.77	30
네바다	5,290,739	2,924.7	19	10.18	41
뉴햄프셔	3,110,088	2,589.6	32	8.84	49
뉴저지	31,575,898	3,877.7	3	11.37	13
뉴멕시코	4,469,003	2,568.4	34	12.17	7
뉴욕	82,153,897	4,514.7	2	14.03	1

주/관할단체	징세액 (천달러)	1인당		100달러당	
		총액(달러)	순위	총액(%)	순위
노스캐롤라이나	20,266,326	2,648.8	29	10.55	33
노스다코타	1,668,354	2,631.5	30	11.49	12
오하이오	32,301,429	2,869.5	20	10.99	23
오克拉호마	7,767,899	2,313.3	45	10.48	35
오레곤	8,536,218	2,574.3	33	10.02	45
펜실바니아	35,192,509	2,934.2	18	10.72	32
로드아일랜드	3,197,279	3,226.3	10	11.56	11
사우스캐롤라이나	9,067,175	2,333.3	44	10.48	36
사우스다코타	1,653,134	2,255.3	47	9.51	47
테네시	11,748,362	2,142.3	49	8.80	50
텍사스	49,231,585	2,456.2	39	9.68	46
유타	5,468,796	2,567.5	35	11.68	9
버몬트	1,784,409	3,004.1	16	12.18	6
버지니아	19,557,644	2,845.6	21	10.16	42
와싱턴	18,118,092	3,147.7	13	11.13	20
웨스트버지니아	4,278,788	2,367.9	43	11.67	10
위스콘신	17,417,597	3,317.6	6	12.71	3
와이오밍	1,357,106	2,827.3	23	11.34	16
콜럼비아특별구	-	-	-	-	-
합중국	812,803,114	2,986.3		11.04	

무 낮다』라든지 혹은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들의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것이고 각각의 주 주민 및 의원에 의해 판단되는 것으로 된다. 그들 조세정책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1세목의 과세베이스나 세율만을 드는 것이 아니고 주의 전체적인 조세구조(tax structure) 및 지출환경(spending climate)을 함께 조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미국에 있어 재산세에 대한 그 기본적인 구조와 운영방법의 개요를 보았다. 미국에서도 재산세는 대부분이 지방세이지만, 그 과세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주의 주법이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그 세수규모 등의 정책을 책정하는 것도 주의회의다. 그 때문에 연방제인 미국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정부 및 주의회가 재산세 정책에 대하여 큰 권한을 갖고 있고 재산세

의 구조는 각주마다 매우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재산세제에 보이는 이와 같은 다양성을 깊이 들어가 보면 각주에 있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산세는 주로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재산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 과세에 있어서는 더욱이 평가라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로 되지만 『재산의 평가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예술이다』고 말해질 정도로 문화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재산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세제도만에 착안하지 말고 제도를 둘러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II. 영국과 일본의 최근 흐름

1. 일본의 기초단체 수입은 고정자산세가 으뜸

전후 일본의 세제는 샤푸프 권고를 그 원점으로 한다. 샤푸프 권고는 말할 것도 없지만 1949년 5월 연합국최고사령관(더글러스 맥아더장군)의 요청에 의해 來日한 콜럼비아 대학의 칼 샤푸프 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7명의 세제사절단에 의해 정리된 『日本稅制報告書』이다.

샤푸프 권고는 신생 일본의 항구적 조세제도를 입안하고 개혁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지방세제에 대해서는 그때까지의 3대 지방세(地租·家屋稅, 住民稅,

事業稅)를 대폭으로 수정하고, 고정자산세의 창설, 도도부현 주민세의 폐지, 부가가치세의 창설을 행하여 시정촌(기초자치단체/시군구)세입의 대폭적인 수입증가를 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되었다.

고정자산세는 이를 받아 1950년의 지방세법 개정에서 고정자산(토지, 가옥, 상각자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기초자치단체(시정촌)의 법정보통세로 창설된 것이다.

고정자산세는 주로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지조·가옥세와 같은 것이라고는 하나 과세주체가 광역단체인 도부현에서 기초단체인 시정촌으로 변하고, 과세표준도 『임대가격』에서 『가액』으로 변경됨으로써 세수가 거의 3배 증가하는 등 지방세로서는 특별한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고정자산세는 어느 시정촌(시군구)에도 널리 존재하는 고정자산을 과세객체로 한다. 세원의 편제도 작고 안정적인 세수를 얻을 수 있는 점에서 시정촌세에 어울리는 기간세목(2004년의 경우 시정촌 총 세수의 약 47.1% 차지)으로 창설 이후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말해진다.

그렇지만, 최근의 국가·지방을 통한 대규모 소득과세 감세가 행해져 온 것이나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아 시정촌민세의 신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정자산세는 상대적으로 그 지위를 상승시켜오고 있으며 고정자산세 부담을 둘러싼 논의는 해마다 높아져 가고 있다.

2004년도 세제개정에서도 부담수준이 높은 상업지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일률로 세액을 감액할 수 있

는 구조가 창설되는 등 고정자산세제는 많은 제도개정이 행해져 오고 있다.

2. 영국 유일의 지방세 카운실 텍스

최근의 영국 정치 흐름을 지방세 차원에서 보면 1992년의 총선 당시 노동당은 상당히 우세한 정치적 위치에서 선거작전을 펴면서 총선거 전부터 연금·아동수당의 증액을 정책으로 내 놓았다.

이에 대하여 보수당은 스스로는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이라 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노동당 정권이 되면 큰 증세로 된다고 공격하였다.

또한 현재의 보궐선거나 여론조사에서 호조를 보이는 제2야당인 자민당이 『연수 10만 파운드(약 2억원) 이상 고액소득자의 소득세 증세와 교육·공적연금 충실』이라는 당시의 노동당 정책에 가까운 정책을 내걸고 노동당의 주된 지지층인 중·저소득층에 어필하고 있어도 이에 대항하여 현재의 노동당 정권은 소득세 증세로 달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역시 자민당의 현재 정책에는 당시의 노동당 정책과 상이점이 있다. 그것은 자민당이 『카운실 텍스의 폐지(및 소득세의 지방세화)』를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자민당은(소득세 증세에 의해 순수한 증세정책 이면서) 『세에 큰 도끼를(axe the tax)』라고 제목을 붙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현재의 시점에서 여론조사는(당시의 노동당과 달리) 동당을 감세의 정당이라고 인식하는 층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은 카운실 텍스가 어떻게 주민에 가깝고 절실한 세일까 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1993년부터 실시된 카운실 텍스는 커뮤니티 차지(통칭은 영국에 악명높은 『人頭稅』)를 대신하는 세제로 『보수당』의 메이저 정권하에서 창설된 자치단체에 있어 유일의 지방세이다. 그 역사적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Rates 세제의 붕괴

영국은 지방자치의 모국이라고 불리지만 1945년부터 1990년 까지 계속하여 Rates(자산보유세) 단세주의를 채택해 온다. 지방세원은 조세 총액의 약 5%에 불과하며, 포괄보조금의 교부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형태이다. Rates는 역진성, 세대간 불공평(동일가옥에 거주자가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가벼워짐), 지역간 불공평(동일 과표라도 세율은 다름), 응익 원칙에 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자치단체는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년 10~50% 정도 세율인상(노동당 지배의 런던 특별구는 80년 90.1% ⇒ 90년 219.2%)으로 변화하며, 75년도에는 Rates 인상율이 43.2%, 물가상승률은 24.3%나 되었다.

보수당 새도우 캐비닛의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대처 수상은 일찍부터 균일하게 부담하는 주민세의 신봉자였다. 지방 소도시의 식료품점 딸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중산계급의 환경영향으로 노동조합을 비판하고, 자기주장이 강했으며, 오일쇼크

〈영국의 지방 3세 비교〉

구 분	세목의 성질	문 제 점	성 격
Rates (1990. 3. 31)	1) 건물의 점유사실에 과세 2) 과세표준은 건물임대가격	1) 단체별 세율의 차이 2) 비주거용 레이트의 편차 3) 단체별 세수의 격차	• 자산세 • 누진세
Community Charge (1990. 4. 1 ~ 1993. 3. 31)	1) 전 성인에 정액과세 2) NDR(비주거용레이트) 국유화	1) 부담자수의 확대 2) 납세자의 파악곤란 3) 극단적인 역진성, 80%까지 감면	• 인두세 • 균등할
Council Tax (1993. 4. 1 ~)	1) 과표는 주택의 자산가치 - 8단계이며, 주택점유자에게 부과 2) 성인 2명 거주를 기준으로 함	1) 자산세·인두세의 중간세 2) 단세제도의 본질적 결함 시정 3) 100% 감면방식 도입	• 절충형 (인두세+ 자산세)

※카운실 텍스 세율은 중앙정부 결정, 자치단체는 예산과 연계하여 세액 결정

를 겪으면서 국내적으로 노조문제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1979년 5월에 집권한다.

그 당시 영국은 중앙정부는 보수당이, 자치단체는 노동당(저소득자 지지)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케인즈 정책과 반대되는 적자해소(중세), 긴축재정, 보조금 삭감 등의 정책으로 81년에는 실업이 폭등(실업자 160만명) 하지만 88년에는 「영국 경제의 기적」을 이루게 된다.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왕성한 추진력으로 노조탄압, 친기업주의 등의 비판이 있었지만, 민영화, 규제완화, 공공복지 축소로 영국의 국민소득은 1970년대에는 프랑스의 80%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은 약 5% 앞서는 상황으로 이의 디딤돌을 대처리즘에서 찾고 있다.

改革으로 『영국병』을 치료한 것이다.

대처수상에 있어 Rates 제한, Rates 폐지

에 의한 중소득층, 기업가의 구제, 지방재정의 억제에 취임시 부터 정해진 로선이였다. 1980년부터 지방자치·재정법에 의한 레이트원조교부금(RSG : Revenue Support Grant)의 삭감, 과세제한(Rates Capping)이라는 조치는 당연히 지방재정에는 권력적 간섭·개입이 되었다.

1990년의 Poll Tax(인두세) 도입은 정치적으로는 노동당 지배 자치단체의 세력 약체화, 재정적으로는 재정팽창의 저지였으며, 행정적으로는 Rates의 납부가 3인에 1인 풀이고, 법인 Rates가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민의 대부분은 비용 부담의 아픔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0년에는 Rates를 폐지하고, Poll Tax(Community Charge)를 도입한다. 영국의 지방세는 Rates의 탈락이라는 오랜 염원을 달성했지만 보다 역진성이 높은 인두세

(Poll Tax)의 등장으로 되고 이 때문에 지방세제는 미중유의 혼란에 빠지고, 결과적으로는 대처 수상의 퇴진 원인으로 되었다.

Poll Tax는 불과 3년의 단명세이고, 1993년에는 자산과세를 기초로 하여 인두세적 색채를 조금 남긴 Council Tax로 다시 바뀐다. 영국의 지방세제는 Rates와 거의 같은 자산세라는 옛날의 세제로 되돌아간 것 뿐 아니라 Rates의 결합도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다.

대처수상의 Community Charge에 대한 기대는 「동일부담, 동일서비스」라는 지방행정의 획일화, 균등화에 의해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활용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비주거용 Rates(법인의 소유 건물 등)를 국세의 양여세화 하는 것에 의해 밖으로는 굴을 파고, Community Charge에 의해 內堀을 파서 노동당이 지배하는 자치단체가 맥을 못 추도록 숨통을 막아 버리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카운실 텍스는 거주용 자산의 가치에 기초하여 거주자의 수도 고려하면서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세율은 8단계의 Band로 결정되어 있고 최저부터 최고세율까지 격차는 3배로 되어 있다.

평균세율이라고 말할 수 있는 Band D에 의한 잉글랜드에서의 평균과세액은 1,167파운드(약 230만원)이고, 이 액은 자치단체에 따라 년 601파운드(약 120만원)에서 1,376파운드(약 270만원)까지 차이를 보인다.

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세율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세입(의존재원)이 확정된 후 이 차액으로부터 각 세율(Band)의 세액을 결정한다. 자치단체의 세입 구성비는 보조금 25%, 국

가의 일반교부금 22%, 사업세교부금 15%, 카운실 텍스 16%, (사용료 등) 기타 세입 22%로 되어 있다.

일반교부금의 재원은 국세이고, 사업세 교부금의 재원은(1990년에 지방세에서 국세화된) 『사업용』 자산에 과해지는 세로 국가가 세율을 정하고(카운실 텍스와 똑 같이) 지자체가 징수하면 세수 전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배분된다. 일반교부금, 사업세교부금 모두 지자체의 일반재원이다. 2005년도에 국세로 신설된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지방에 배분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은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나. 과세제한(Rates Capping) 도입

대처정권의 과세제한은 제도의 불완전함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권적 제재로서 자치단체를 스스로 통제하여 굴복시키려 하였으므로 당연히 반발과 혼란을 일으켰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도 보너스 초과 지급 단체에 대하여 정부에 의한 재정적 제재가 행하여 졌지만 특별교부세 산정에 있어 초과 지급분을 삭감한다고 하는 조치이고 당연히 자치단체의 재정지출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또한 과세권 제한까지는 이르지 않은 미온적 조치였다. 참고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와 지방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다르다. 지방공무원은 각각의 지자체별로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1981년 지방

세율 인상을 주민투표로 억제하는 법안을 11월에 지방재정법안으로 제출했지만, 지방자치 침해라는 맹렬한 반대로 이 법안의 철회는 어쩔 수 없게 되었으며, 영국의 자치단체는 전통적으로 과세자주권이 자치단체에 존재한다고 하는 이념이 정착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 있어 세율은 자유롭게 결정되고 상당히 격차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불평등이라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에 딱 맞는 부담으로 최종적으로 지방세(Rates)의 세율에 의한 조정이 근본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즉, 필요로 되는 세출액에 대한 재원으로 보조금, 교부금을 제외한 잔액을 Rates로 보충한다는 방식을 취해온 것이다. 따라서, 과세자주권은 영국 지방재정 자주권의 精緻이고, 이것을 구속·제한하는 것은 확실한 지방자치의 도전이자 침해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5년에는 과세권의 제한을 도입하고, 노동당이 지배하는 大 런던 區를 폐지해 버리게 된 것이다.

카운실 TAX의 세액결정에 관해서는 위의 기타 세입을 제외한 정책적 재량이 가능한 세입을 베이스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에서 카운실 TAX는 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국가가 상정하는 각 지자체의 총 세율을 넘음) 경비증가 1%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액 4%의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된다고 하는 톱니바퀴 효과가 지자체 관계자로부터 문제시 되고 있다.

실제 카운실 TAX의 평균세액은 최근 상승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성장률은(전회 총선거 전년의) 2000년에는 3.1%까

지 억제되었다고는 하나 '01년은 4.5%, '02년은 6.7%, '03년은 9.5%로 되어 있다.

또한, 이 과세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거주용 자산의 가치 평가액은 제도 도입시인 1991년에 결정된 것이지만 그대로 현재도 이용되고 있다. 2007년에 검토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과표는 10년 이상 동일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영국경제는 호조이고 특히 런던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고등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의 검토에는 카운실 TAX의 부담이 급증한다고 하는 걱정이 잠재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넓혀져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들의 것에서 세액이 결정되는 매년 봄철에는 카운실 TAX의 신장률이나 장래 재평가에 관한 억측(대부분은 『대증세이다』로 되어 있음)이 미디어의 제목을 장식하는 것도 많다.

국세의 증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억제해 오고 있는 현 정권에 있어 머리가 아픈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전가의 보도인 캐핑(capping)의 이야기가 부상해 왔다.

다. 노동당에 의한 정치적 캐핑

노동당 정권은 2004년에 최초의 캐핑을 실시하였다. 캐핑이라는 것은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결과 산출된 카운실 TAX의 세액 상승에 대하여 국가 권한으로 그 상승액의 상한을 지시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은 자치단체는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세입에 맞게 세출을 삭감해야 한다.

원래 캐핑은 카운실 텍스 제도를 창설할 때 함께 도입되어 보수당 정권에 의해 실시되어 왔다. 여기에 대하여(노동당 지배의) 자치단체의 불만은 강했던 것이다.

1997년의 브레아 정권 탄생에 앞서 노동당의 공약에서는 『복잡하고 보편적인 캐핑을 폐지』 하는 것으로 되었다.

노동당으로서는 캐라한 내각시대인 1979년 겨울 노동조합의 스트라이크가 빈발하고 죽은 자의 매장까지 거부하는 사태로 되어 정권은 급속하게 신뢰를 잃고 동년 5월 선거에서는 보수당의 대처정권 탄생으로 연결된 경위가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금회의 캐핑 지시는 극히 신중한 수준을 밟았었다. 중앙정부는 각 자치단체의 실제 예산 및 이에 기초한 과세액이 확정된 2004년 3월말에 들어와 처음으로 소방을 포함 7단체에 대하여 캐핑을 지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실제의 지시는 그 후인 7월에 있음).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의 보조금·교부금은 7% 증가, '97이래 실질 30% 증가라고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자치단체는 카운실 텍스를 올릴 이유는 없다고 읊조렸다.

최종적으로 캐핑 대상으로 된 6개 지자체(소방을 제외)의 정치상황(의회과반수 획득 정당)을 보면 노동당 2, 보수당 2(무소속과의 연립을 포함), 자민당 2로 되어 있고 정당에 의한 편중은 없다.

다만, 이 6개 단체에 공통하는 것은 2004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던 점이다. 자치단체 스스로의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한하여 세출증가(지방세 증가)로 되는 경향이 있

다고 말해지고 있다.

즉, 가장 높은 신장률로 된 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에 기초한 증세안은 39%였지만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28.4% 증가로 억제된 경우도 있다.

주목되는 것은 카운실 텍스의 개혁에 관한 조사를 위해 버밍햄大學 교수인 Sir Michael Lyons(54세로 20대부터 자치단체 간부를 역임하고 영국의 제2 도시인 버밍햄시의 사무국장도 경험함)가 등용되어 2002년의 소방개혁(소방명칭)은 소방·구조로 바꾸며, 간부의 임용방법 개선, 승급개선 등과 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중앙 부처의 슬림화(2만명 정도의 공무원을 런던 근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7천명의 직을 폐지하며 구체적 대상으로 되는 부처와 직명을 특정함)를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현재의 노동당 정권의 차기정권(말하자면 “증세 없는 공공서비스 충실”)이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IV. 마무리

위에서 살펴본 대로 미·영의 재산세 제도는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 우선, 세액 결정에 있어 미국은 세무당국이 재산세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 세입 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그 총액을 그 구역내의 재산의 총 과세 가격으로 나누어 세율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지방세 비중이 매우 낮은 영국은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출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세입(의존재원)이 확정된 후 이 차액으로부터 각